

April 06, 2015

개정 상법(보험편) 소개 – (1) 약관 설명의무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하 “개정 상법”이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법을 “개정 전 상법”이라 합니다)이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개정 상법(보험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리걸업데이트를 몇 회에 걸쳐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약관 설명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개정 전 상법	개정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u>명시 의무</u>)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u>알려주어야 한다</u> .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u>설명 의무</u>)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u>설명하여야 한다</u> .

개정 전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보험편) 문언 상으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 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하여 보험회사의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2.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개정 전 상법	개정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u>1월 내</u> 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u>3개월 이내에</u>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전 상법상 보험자의 교부·명시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이 짧아 취소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8월 10일 입법예고 되었던 개정 상법(보험편)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는 개정 전 상법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을 취소권 행사의 기산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종래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 전 상법에서는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보험계약 취소권 행사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판례의 내용에 대해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 8월 10일 입법예고 되었던 개정 상법(보험편)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관계는 그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취소권 불행사시 약관규제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됨을 명시한 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시행된 개정 상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상법 하에서도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개정 상법에 따른 취소권의 행사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04 | E-Mail. leesh@shinkim.com |
| ● 백상미 변호사 | TEL. 02 316 4226 | E-Mail. smbak@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